

학과간 연계교육과정운영 협약서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은 대구보건대학 사회복지과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대학간 교육과정 연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과 대구보건대학 사회복지과는 상호 학술적인 교류를 통해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류학과간 긴밀한 협력과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공동의 노력을 다하고자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연계교육과정의 운영) 양 대학의 교류학과 연계교육과정은 공동으로 개발하여 운영한다.

제3조(연계교육교재의 공동개발) 양 대학 교류학과의 연계교육을 위한 교재개발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 개발한다.

제4조(시설 및 기자재 공동활용) 교육과정 연계운영에 필요한 경우, 시설 또는 기자재를 공동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교수교류 및 협력) 연계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학술교류를 위하여 교수교류를 통한 협력을 도모한다.

제6조(연계교육과정 운영방법) 양 학과(전공)의 연계교육과정은 해당학과간 유사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연계교육과정 이수 후 조치) 연계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대구대학교의 교류학과 진학을 희망할 시는 우선 선발(정원의 특별전형)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학과(전공)간 연계교육과정운영위원회) 연계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과간 연계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구성인원과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9조(협약 기간 및 효력) 이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교류학과간 연계교육과정운영위원회 합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폐기될 수 있다.

2004년 2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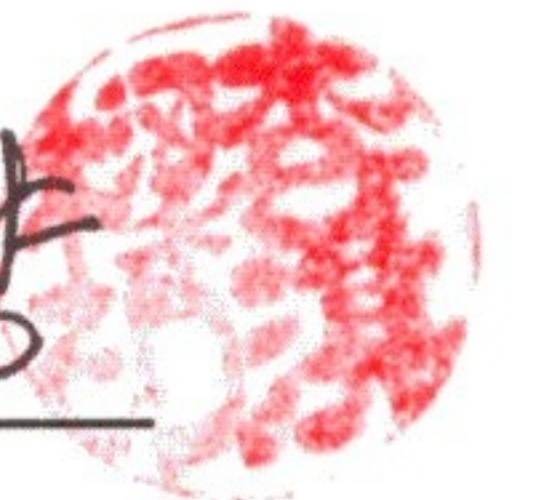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전공 책임지도교수

이준상



대구보건대학
사회복지학과장

이기량



연계교육과정 편성표

| 대 학 | 학년 | 학기 | 연계교과목 1 | 연계교과목 2 | |
|------------------------------------|----|----|-----------|-----------|--------|
| <u>대구조선대학</u> <u>사회복지 과</u> | 1 | 1 | 사회복지개론 | 사회복지실천론 | |
| | | 2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현차 | |
| | 2 | 1 | 가족복지론 | 노인복지론 | |
| | | 2 | 사회복지조사론 | 자원봉사론 | 장애인복지론 |
| 대구대학교 <u>사회복지 학과</u> | 3 | 1 | 사회복지개론 | 학교사회사업론 | |
| | | 2 | 교정복지론 | 사회복지장론 | |
| | 4 | 1 | 여성복지론 |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
| | | 2 | 사회복지세미나 | 산업복지론 | |

2004. 2. 26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 대학
사회복지 학과 책임지도교수

이 준 상



대구조선 대학
사회복지 학과장

이 기 랑

